지배구조내부규정 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사 지배구조내부규정 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 첨부 : 지배구조내부규정 1부. 끝.

[첨부]

지배구조내부규정

소관부서 : 경영기획실

제정 : 2022.07.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배구조원칙) ①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제고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이사회 운영, 안정적인 경영승계, 주주 및 투자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시) ①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회사와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정·변경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매년 이 규정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회사와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정 및 변경 등)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제정·개정한다. 다만, 법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어변경,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이사회의 권한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권한 및 구성현황

제5조(이사회 권한) ① 이사회는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6 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③ 이사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사 이외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그 임기는 취임 후 1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며 의장의 유고 등으로 새로 선임된 의장의 임기도 이와 동일하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주재한다.
③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통지 및 소집을 대행하며,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소집권자로 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8조(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관련 법규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 이사는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사는 전략적 사고방식, 실용적 지식, 성숙한 판단력 및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9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전략,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이사회는 「상법」 및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이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이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라.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경영일반 중 중요한 사항

가.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계약

1) 건당 20억원을 초과하는 동산 및 무체재산권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

2) 건당 5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

3) 건당 30억원을 초과하거나 출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을 취득하는 출자계약

4) 건당 50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

5) 타인의 채무보증계약

6) 기타 대표이사가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계약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해산, 영업양도,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마. 자회사 등의 설립 및 청산 (추가지분 취득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사. 차입금에 관한 사항. 단, 한도거래인 경우에는 차입한도에 관한 사항

아. 고문의 추대 및 선임.

3.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 경영위험관리규정, 집합투자재산위험관리규정,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지배구조내부규정,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내부통제규정,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회계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다만, 법규 및 타 규정 변동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등은 제외한다.

나. 대표이사성과급지급규정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사회에 제정 및 개폐를 위임한다.

다.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규정

4. 지배구조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가.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다. 이사의 선임 및 해임

라.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상무이상의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마. 이사의 보수 및 기타 보상의 결정

바. 이사회 평가체계 결정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5. 자금조달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가. 발행가격과 전환가격을 포함한, 일체의 주식 및 채권 발행의 결정

나. 자본금의 변경, 제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의 발행 또는 소각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라.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6.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중요사항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감독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한 사항

나.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경영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의 집행결과와 그 실적보고

2. 종합적인 경영분석보고

3.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4.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부의절차) 각 부서는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관한 주관부서에 제출하며 주관부서는 이사회부의안건을 이사 및 준법감시인에게 배부한다.

제11조(제안자)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담임이사가 제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의 보호, 회사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법률, 회계, 경영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관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이사가 관련 법규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사의 책임문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유능한 이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자기부담액 등 상세내역은 당해 보험계약에 따른다.

제4절 이사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4조(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 ① 이사(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사 선임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없이 이사회의 심의·승인을 통해 주총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심의·의결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이 경우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④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1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의 사임, 해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관련법규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의 구성이 관련법규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한다. 다만, 법정원수에 미달하고 또한 업무상 지장이 있을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⑥ 보결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불구하고 제4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⑦ 회사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와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 퇴임의 기준과 절차)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원 제출
3.「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규, 정관, 규정에서 정한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규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 또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등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특별 심의·의결한 경우

제5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6조(이사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른 이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이사회 개최일 1일전까지 각 이사 및 준법감시인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e-mail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부의안건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부의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의안건 담당 이사는 사전에 직접 부의안건을 설명하거나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 심의·의결 방법) ① 이사회의 심의·의결은 관련법규 및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심의·의결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이 경우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심의·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이사는 출석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 부의사항 중 내용이 통상의 진행업무 사항이거나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관계자 출석)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업무와 관련된 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 작성책임자는 작성된 의사록에 이사회 심의결과 및 서명 내역을 확인 날인 한다.

제20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운영에 대한 평가는 매년 초 1회 실시한다.
③ 평가지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⑤ 본 조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주주총회) ① 이사회 의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의 임원을 말한다.

제 23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관련 법규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 임원은 전략적 사고 방식, 실용적 지식, 성숙한 판단력 및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③ 회사는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업무성과, 전문성, 윤리성 등 별도의 자격기준을 둘 수 있다.

제24조(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24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제3항에 의거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된 후에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2절 임원의 권한·책임

제25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직무에 상응하는 전결권을 행사한다.
③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가 정한 업무분장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직무에 상응하는 전결권을 행사한다.
④ 임원은 업무수행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회사의 내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26조(임원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인 임원을 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 선임한다.
② 이사가 아닌 임원 중 상무 이상의 임원과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인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가 아닌 임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지 않는 자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는 임원의 선임 시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규상 임원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이사인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1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⑤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임기 종료 후 연임할 수 있다.
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⑦ 임원의 연임기준은 신규 선임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⑧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임원이 아닌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퇴임 등)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원 제출
3.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인사 관련 제 내규에서 정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서 임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③ 임원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와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28조(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① 회사는 신임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현황, 전략, 금융, 재무,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보고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 다른 회사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임원은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파견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임원후보자의 선정과 교육) ① 회사는 직원 중에서 업적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핵심인재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를 임원 선임 시에 참고한다.

② 회사는 직무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임원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장기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임원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30조(임원의 성과평가) ① 임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보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성과평가의 대상과 절차는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의 직급과 담당 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한다.

1. 단기적인 외형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적용한다.
2. 장기성과와 수익성 관련 지표를 중심지표로 설정하여 최종 평가와 연계하고, 위험과의 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의 반영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지 아니한다.
3. 성과평가 지표는 시장상황, 경기예측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4. 준법관리,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임원의 업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기준은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연동하지 아니한다.

④ 성과평가의 결과는 성과급의 지급,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성과급 등으로 구성된다.
② 기본급은 직무가치 및 특성, 산업과 그룹 내 보상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성과급은 개인별 성과보상 한도에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평가년도 익년도에 지급한다.
④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수위원회규정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장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

제32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제3호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개시결정 시기를 정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⑤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⑥ 회사는 제1항의 내부규정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33조(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① 회사의 이사회 지원 담당부서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② 회사의 이사회 지원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제34조(최고경영자의 자격) 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의 세부적인 자격요건 등은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함을 따른다.

제35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이사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시 필요한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함을 따른다.

제36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①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후보 제안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규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본 규정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③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된 경영승계 계획과 달리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직무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책임 경영체제 확립) ① 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며 선임 및 퇴임 관련한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2.07.29)

이 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 사 회 부 의 안 건

제 차 이 사 회 의안번호 제 호 20 . . .	부 의 근 거	소 관 부 서

1. 건 명 :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

4. 참고사항 :

5. 첨 부 :

(별지 제2호 서식)

제　　차　이사회 의사록

20　년　월　일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

(표　지)

제　　차　이사회 의사록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장　　소 :
출석이사 :
결석이사 :
참 여 자 :
비　　고 :
기 록 자 :

(1 면)

의안번호　제　　호　　제안자 :　　소관부서 :

건　　명 : 경과요령 : 의결결과 : 반대이사 및 그 이유 :
의안번호　제　　호　　제안자 :　　소관부서 :
건　　명 : 경과요령 : 의결결과 : 반대이사 및 그 이유 :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인정함

의 장 :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